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93,004,078	8,790,122
일반회계	238,189,372	7,145,681
특별회계	54,814,706	1,644,441
기타특별회계	54,814,706	1,644,441
상하수도사업	13,515,272	405,458
의료급여기금운영	982,207	29,466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78,842	32,365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00,000	6,000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10,061,886	301,857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3,555,000	406,650
농공지구조성사업	447,349	13,420
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전금사업	14,880,000	446,400
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	94,150	2,82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73,18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